



2010.10.20(수) ▶ 23(토) 창원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

## 참가신청서

### 회사정보

회사명			
주 소	(우편번호)		
대표자		Web-site	
담당자		E-mail	
TEL		FAX	

### 신청면적 및 참가비용

(부가세 별도)

부스번호			
독립부스 최소 18㎡ 이상	₩220,000/㎡	_____ m X _____ m	₩
조립부스 최소 9㎡ 이상	₩270,000/㎡	_____ m X _____ m	₩
전시품목 (* 상세히 기재)			

### 참가비납부일정

제 출 서 류 : 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참 가 비 : 1차 (참가신청서 제출 후 2주 내) - 참가비의 50%입금  
 2차 (2010년 6월 30일까지) - 잔금 입금  
 입 금 처 : 한국외환은행  
 케이웨어스(주) 계좌번호: 630-006755-841

Signature

담당자: \_\_\_\_\_  
 직 책: \_\_\_\_\_  
 날 짜: \_\_\_\_\_



2010.10.20(수) ▶ 23(토) 창원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

## 전시회 참가규정

### 제 1 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소정의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국제조선해양산업전(MARINE TECH KOREA) 전시회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시, 통영시, 거제시를 말한다. "주관사"라 함은 케이웨어스(주), (주)지엔에이인터내셔널,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Reed Exhibitions을 말한다.

### 제 2 조 (참가신청 및 계약)

1. 전시회 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관사에 제출함으로써 본 전시회 참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 3 조 (전시면적 배정)

1. 주관사는 신청 및 참가비 납입 순 부스규모에 따라 전시 위치를 배정한다.
2. 주관사는 전시회의 공간 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관사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4 조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관사의 허락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사는 즉시 중지, 철거 및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관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관사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형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주관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 5 조 (납입조건)

1.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신청금을 참가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납입해야 하며, 잔금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부대시설은 인보이스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입해야 한다.
2. 전시자가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사는 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계약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6 조 (해 약)

1.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 부스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관사는 일반적으로 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전시자가 전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전시자는 반드시 전시개시 60일 이전(2010년 8월 20일)에 주관사에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 납부된 참가신청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3. 2010년 8월 20일 이후에는 전시회 참가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만일 이 기간에 전시자가 불가피하게 참가를 포기할 경우 전시자는 전시회 신청 부스 참가비 중 50%를 주관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2010년 9월 20일 이후 취소시는 100%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세 별도)

### 제 7 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1. 주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 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8 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설치 기간동안 시간외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주관사의 허락을 받은 후 시간외 사용료를 전시자가 주관사에 지불하여야 한다. 모든 장치업체 선정은 CECO에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

### 제 9 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전시자는 전시기간 내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은 즉시 주관사에 지불하여야 한다.

### 제 10 조 (전시장내 경비, 위험부담, 도난 및 보험)

1. 주관사는 전시회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 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제 11 조 (방화 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 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 제 12 조 (보충 규제)

1. 주최사는 필요한 경우 참가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 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 13 조 (분쟁 해결)

1. 본 참가 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 및 주관사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